

『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(2021. 4. 1.시행)에 따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나.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1조)

다.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라.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마.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바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
사.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양성평등 기본법」,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,
「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」
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상위법인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이 개정('21.4.1.시행)됨에 따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 - 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비율을 확보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화학사고 영향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